

## 【 2 】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4. 2. 11

발 의 자 : 정창범 의원외 2인

### □ 제안이유

-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하고
-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의정활동비를 월 “550,000” 원에서 월 “900,000”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씩 지급함을 신설함(안제2조).
- 다.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중 숙박비를 여비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함(안제4조 별표2).

양주시 조례 호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중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 를

“의정활동비는 월 ” 900,000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여비) 제3항 관련 “별표2” 중 속박비(1야당)란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항공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가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의 원	가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 신·구조문 대비 표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 (—————)	
구 분	숙박비(1야당)	구 분	숙박비(1야당)
의 장 부의장	<u>151</u>	의 장 부의장	<u>166</u>
	<u>109</u>		<u>120</u>
	<u>84</u>		<u>92</u>
	<u>72</u>		<u>79</u>
의 원	<u>132</u>	의 원	<u>145</u>
	<u>86</u>		<u>95</u>
	<u>64</u>		<u>70</u>
	<u>56</u>		<u>62</u>

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란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표증 제2차시험 과목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인 경제법의 기존 출제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동법을 출제범위에 추가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6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섭외사법의 명칭이 국제사법으로 변경되고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강제집행부분이 민사소송법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 통령 노 무 현 囍

2003년12월18일

국 무 총 리 고 건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허 성 관  
장 관

### ◎대통령령 제18161호

###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체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27조를 삭제한다.

제54조의10 전단중 "제48조의10"을 "제47조의10"으로 한다.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7중 숙박비(1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비(1일당)
46,000
46,000
46,000
25,000

별표 8중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비	숙박비
40	205
35	166
35	166
30	145

별표 10의 경기도의 행정(1)부지사란중 "화성군·광주군"을 "화성시·광주시"로 하고, 동표의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란중 "양주군"을 "양주시"로, "포천군"을 "포천시"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7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함(영 별표 5).
- 나.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5).
- 다.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함(영 별표 7 및 별표 8).

〈법제처 제공〉

## 第5編 國家公務員 第3章 報酬·實費辨償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개정 2002. 1. 4〉  
여비지급구분표(제 3 조관련)

구 分	해 당 공 무 원
특 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 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 ·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쳤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 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1 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 2 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 1 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li> <li>2. 1호봉인 검사</li> <li>3. 치안정감·소방총감</li> <li>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 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li> <li>5. 소장·준장</li> </ol>
제 2 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 2 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 1 호 나목 및 제 2 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 1 호 가목 및 제 2 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li> <li>2. 2호봉이하의 검사</li> <li>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li> <li>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 본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li> <li>5. 대령·중령</li> </ol>

(추 139)

## 第5編 國家公務員 第3章 報酬·賞賚辨償 공무원여비규정

제 3 호	<p>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p> <p>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p> <p>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학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p> <p>4. 소령·대위·중위·소위</p>
제 4 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02.1.4〉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 1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 2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 3 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제 4 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5,000

## 비 고

-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수로여행시 폐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총 139)

## 第5編 國家公務員 第3章 報酬·實費辨償 公務員여비규정

[별표 3] <개정 2000. 4. 18>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항공운임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이상의 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 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03. 1. 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가 나 다 라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 나 다 라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 나 다 라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가 나 다 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나 다 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나 다 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 위인 군인	가 나 다 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총 151)

## 第 5 編 國家公務員 第 3 章 報酬·實費辨償 공무원여비규정

동표 제 4 호(준위 제외) 해당자	가	26	129	67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kitts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록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투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페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튜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총 151)

##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 ·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

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양주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 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하며,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양주시의회의원의 정 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급 기준 액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인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 비 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현지활동 및 여행(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양주시의회 의원의 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항공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가	1등 정액	35	151	107	140	170	195
	나		35	109	78			
	다		35	84	58			
	라		35	72	49			
의 원	가	2등 정액	30	132	81	130	155	180
	나		30	86	59			
	다		30	64	44			
	라		30	56	37			